고용노동부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1. 관련
   가.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   나. 행정절차법 제14조

2.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
   가. 공고번호: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(공시송달) 공고 제2024-47호
   나. 공고장소: 창원지청 및 창원고용센터 홈페이지
   다. 공고내용: 붙임 참조
   라. 공고기간: 2024. 5. 3.~2024. 5. 18.(15일간)

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. 끝.

주무관	남태경	팀장	전결 2024. 5. 3. 김진선
협조자			

시행 창원고용센터-8236 접수

우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(상남동 27-3 고용지원센터 빌딩) 6층 국민취업지원팀 / http://moel.go.kr/changwon/

전화번호 055-239-0994 팩스번호 0508-8230-0427 / namtg512@korea.kr / 비공개(6)